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2월 28일 11시 06분



목차

목차	2
자동차등록	3
수수료	3
관련법규	3
등록기간	3
구비서류	3
매매(양도, 양수)관련 (공통서류 + 해당추가서류 준비), (인감증명서 제출시 인감날인)	3
기타 이전서류(공통서류 + 해당추가서류 준비)	4
과태료	5

자동차등록	건설기계등록	이륜차신고	과태료	취득 등록면허세
검사/의무보험	자동차등록현황	민원서식	자주하는 질문	오시는 길

- [이전등록](#) ▪ [변경등록](#) ▪ [신규등록](#) ▪ [말소등록](#) ▪ [저당권설정/말소등록](#) ▪ [임시운행허가](#)
- [등록증\(번호판\)재발급](#) ▪ [등록원부발급](#) ▪ [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](#)

수수료

중지대-1,000원(타시도 1,500원), 인지대-3,000원, 취.등록세, 공채

관련법규

자동차관리법 제12조, 자동차등록령 제26조~30조,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~36조

등록기간

구분	등록기간
매매, 경락, 공매	매매는 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기타사유는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
상속	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
증여	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

※ 가족간 거래도 매매에 준하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.

구비서류

 **매매(양도, 양수)관련 (공통서류 + 해당추가서류 준비), (인감증명서 제출시 인감날인)**

거래관계	구비서류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자동차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(전자본인서명확인서) 또는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제출(본인 내방시) <p>(http://www.yeosu.go.kr)</p>

공통 서류	①양도 인 (전소 유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는 인감증명서 불필요. 신분증 지참 ▪ 자동차 양도증명서1부(도장날인, 본인 방문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시 서명 가능) ▪ 자동차등록증 ▪ 압류 및 자동차세 미납시 이전등록 불가 ※ 양도증명서는 차량등록에 비치된 서식으로 작성하고 양도·양수인이 서명또는 날인하여야 유효합니다. 	
	②양수 인 (신소 유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이전등록신청서 ▪ 의무보험 가입증명서(피보험자 : 양수인) ▪ 변호판(2개) - 변호변경시 ▪ 신분증 ▪ 위임시 : 위임 받은자 신분증, 위임장(위임자의 도장날인) 신분증 사본 / 위임장에 위임자 서명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▶ 법인 : 위임 받은자 신분증, 법인인감증명서, 위임장(법인 인감 도장날인) 	
추 가 서 류	개 인	③양도 인 (매도 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추가서류 없음
		④양수 인 (매수 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지방세감면대상자 : 장애인등록증, 국가유공자등록증, 주민등록등본,고엽제후유증환자,5.18광주민중화운동 부상자증명서
	법 인	⑤양도 인 (매도 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법인등기부 등본(말소사항 포함) ▪ 사업자등록증 ▪ 법인인감증명서(자동차매도용)
		⑥양수 인 (매수 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법인등기부 등본1부 ▪ 사업자등록증사본1부 ▪ 법인인감증명서1부 ▪ 위임장(법인인감도장 날인), 위임받은자 신분증
	참 고 사 항	<p>※ 공통서류 + 추가서류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</p> <p>예시) 양도인이 개인이고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: ① + ② + ⑥ 개인과 개인의 양도 양수의 경우 : ① + ② + ④ ※ 신고의무자는 양수인(신소유자)입니다.</p>	

기타 이전서류(공통서류 + 해당추가서류 준비)

구분	구비서류	
추	상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사망자 -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 1부 ▪ 상속포기서 (상속자를 제외한 전원의 날인 및 서명), 상속포기자의 신분증 사본 혹은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중 택1) ▪ 상속인 신분증 > ※유의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상속순위 : 1) 배우자 및 직계비속 (최근친이 우선함) 2)직계존속 3)형제·자매, 4) 4촌이내 방계혈족 ▪ 받을 상속자가 없거나 포기하면 (후순위 상속의 경우) 법원 판결로 상속하여야 함 ▪ 상속받지 않고 폐차하고자 하는 경우 압류해제 및 과태료 완납 후 폐차가 가능 (3개월 이내)
	법원경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법원판결문 원본 (법원) ▪ 경락대금완납증명서 (법원)
	확정판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판결문 원본(법원)

가 서 류	법인합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법인등기부등본(합병사항 기재된 등본) - 신법인 ▪ 법인합병계약서 ▪ 합병된 법인 폐업사실증명서 - 구법인 ▪ 법인 인감증명서 - 합병된 법인
	공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소유권 이전등록 촉탁서(공매기관) ▪ 등기(등록)청구서 ▪ 매각결정통지서 ▪ 압류해제조서 ▪ 공매처분에 의한 압류말소등기(등록) 촉탁서
	관용차량 매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불용처분매각결정서(매각기관) ▪ 매각대금납부영수증(매각기관)
	원고 강제 이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법원판결문 원본 (법원) ▪ 송달/확정증명원(법원)

과태료

구분	기간경과시과태료	
	매매, 증여, 상속, 기타	기간경과 후 10일내
10일 경과 후 매일 초과시 마다		1만원 (최고50만원)

Yeosu Web Contents

